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

어린이 및 가족  
권리



조기 중재 지점  
여성 및 어린이 보건과  
공중위생부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보건 사회 복지부  
(919) 707-5520  
2013 년 4 월

[www.bearly.nc.gov](http://www.bearly.nc.gov)에서 추가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

연락처 정보

본인의 지역 어린이의 발육서비스 기관은:

\_\_\_\_\_

CDSA 주소: \_\_\_\_\_

\_\_\_\_\_

CDSA 전화번호 \_\_\_\_\_

CDSA 팩스번호: \_\_\_\_\_

본인의 조기 중재 서비스 코디네이터: \_\_\_\_\_

\_\_\_\_\_

전화번호: \_\_\_\_\_

*기타 연락처*

주소: \_\_\_\_\_

\_\_\_\_\_

이메일: \_\_\_\_\_

휴대폰: \_\_\_\_\_

비고:

#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니아 영아 프로그램

## 어린이 및 가족의 권리 관련 통지

3 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의 어린이 및 가족의 권리 관련 통지에서는 장애인 교육법(IDEA)로 널리 알려진 연방법에서 정의를 내린 귀하 가족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IDEA 의 C 부분에서 자격을 갖춘 영아(3 회 생일까지)를 위하여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에서는 IDEA 의 부분 C 는 시스템은 조기 중재 프로그램 또는 영아 프로그램(ITP)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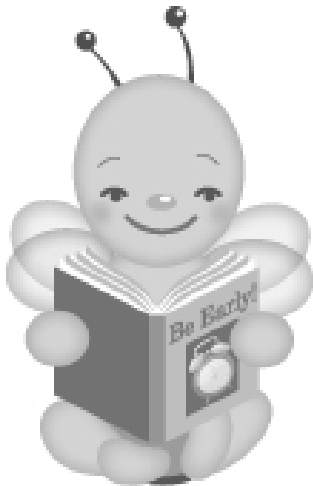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ITP)의 주요 기관은 노스 캐롤라이나 공중위생부에 있는 여성 및 어린이 보건과의 조기 중재 지점입니다. 지방 수준의 조기 중재 지점의 어린이의 발전 서비스 기관 (CDSAs) 에서는 영아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감시합니다. 주 전역에 있는 CDSAs 에서 영아 프로그램 서비스에 접속하고 감시합니다. CDSAs 에서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100 여개 자치주의 단일 또는 다양한 집수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연방법 및 규제에 근거한 귀하의 권리에 대한 공식 통지이며 귀하에게 낯선 몇몇 용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서에 제일 처음 나타난 몇몇 단어와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용어 사전의 몇몇 단어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용어 사전에서 정의를 내린 단어 또는 문서에 나타난 단어들은 문서에 굵은 글씨체로 표시됩니다.

조기 중재 서비스 코디네이터(EISC)는 귀하의 가족과 협력하여 추가 자원 및 자료들을 제안하여 귀하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쉽게 도와드립니다.

## 목차

소개 .....	페이지 1
사전 통지 .....	페이지 2
부모 동의서 .....	페이지 3
기록 검토 .....	페이지 4
기밀정보 .....	페이지 6
분쟁해결 .....	페이지 7
대리 부모 .....	페이지 10
용어 .....	페이지 11







## 소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프로그램(N.C ITP)은 최대한 많은 가족이 참여하고 조기 중재 과정의 각 단계에서 학부모의 동의(허가)를 보장하고 의로로부터 시작하여 저희가 어린이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어린이와 가족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계획하고 제공하기로 결정을 내리면 시작하였던 의뢰를 계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는 장애인 교육법(IDEA)으로 불리우는 연방법의 부분 C 에서 설명한 국가 조기 중재 시스템의 일부분입니다. 조기 중재 프로그램(34 CFR 303 부분)에 대한 연방법규는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 적용됩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 포함된 절차적 보호조항은 ITP 에 의뢰되었거나 학부모와 함께 ITP 에 등록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드시 부모들에게 34CFR 303.430-438 의 분쟁해결 옵션을 포함한 34CFR 303.430-438 의 연방법규에 근거하여 정의를 내린 절차적 보호조항에 대하여 알려주어 활약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들 자녀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에서 리더쉽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학부모 권리 문서는 연방 C 부분 규제에 근거하여 정의를 내린 어린이와 가족의 절차적 보호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입니다.

귀하와 귀하 가족은 자발적으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 참여해야 합니다. 귀하는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귀하 자녀의 의료 또는 기타 기록에 기반한 설정된 조건이거나 설정된 발육지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여러 전문분야 **평가**를 실시하여 귀하 자녀의 자격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십시오. 만약, 자격이 있을 경우, 의뢰를 시작하여 45 역일 이내에 **평가**와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을 실시해야 합니다.

- 만약,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서 자격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IFSP 에 추가된 서비스가 시작된지 30 일 이내에 IFSP 에서 확인된 귀하 자녀와 가족을 위한 적합하고 적시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EIS)**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평가, IFSP 발전, 서비스 조정과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적격성 결정 평가와/또는 서비스를 받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IFSP 모임 초대장을 가지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의 신분확인, 평가 또는 편성이거나 아니면 귀하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제안하거나 거절하기 10 일 전에 사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귀하 자녀의 **자연 환경**에서 어린이의 발육수요에 부합되는 적합한 최대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식별정보(PII)**의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무료로 귀하 자녀의 조기 중재 기록의 초기 사본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조기 중재 기록을 검토 및 해당 경우,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무료로 적격성 평가, 결정, 어린이 평가, 가족 평가와 IFSP 모임이 끝나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의 IFSP 평가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정당한 법적 **절차**로 식별, 평가, 적격성, 편성 또는 귀하 자녀를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영아 프로그램 정책에 근거한 모든 문제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적인 **중재**에 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약, 주의 기관, 지역 기관 또는 개별적 제공자가 연방 또는 진술 부분 C 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진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제때에 고소를 기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권리 이외에도, 귀하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부분 C, 하위부분 E)에 근거한 특정 절차적 보호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사전 통지서

사전 통지서는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영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10 역일 이전에 조기 중재 지점의 어린이 발육 서비스 기관(CDSA)에서 특정 조치를 취하여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원하실 경우, 10 역일 이전에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귀하 자녀의 신원확인, 평가 또는 편성 또는 귀하 자녀와 가족에게 제공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을 제안하거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지의 내용:

- 제안되거나 거절된 조치.
-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절하는 이유.
- 모든 절차적 보호조항은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N.C. ITP 에서 취한 조치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고소장 제출 방식과 이러한 절차 일정의 설명을 포함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고소 절차. (본 문서의 분쟁해결 부분을 참조해 주십시오.)

통지는 반드시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모국어 또는 자주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언어 또는 기타 의사소통 방식이 문 어가 아닌 경우, CDSA 는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합니다:

- 통지는 구두로 번역되거나 귀하의 모국어로 된 기타 방식 또는 의사소통의 기타 방식을 통하여 번역되어야 합니다.
- 귀하는 본 통지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 이 섹션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청각 장애를 가졌거나 난청일 경우, 반드시 귀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수화, 점자 또는 화법 )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학부모 동의서

동의의 의미:

- 귀하는 동의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의 **모국어** 또는 의사 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귀하는 필요한 활동을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동의서는 활동을 설명하고 곧 공개할 기록과 기록을 받을 사람의 이름을 명단에 올려야 합니다.
- 귀하는 자진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언제든지 서면형식으로 동의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동의서를 취소할 경우, 동의서를 취소하기 전에 취한 조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귀하 자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기 전.
- 조기 중재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 공공혜택 또는 보험 또는 민영보험을 이용하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전.
-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모든 **개인식별 정보**를 공개하기 전.

만약, 귀하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연방 부분 C(34CFR 303.414)규제와 가족교육 법규 및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FERPA(34 CFR 99.31)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FERPA(34 CFR 99.31)하에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부분 C 에 근거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때 계약자 또는 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개할 경우.
- 부분 C 하에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목적을 제외한 기타 목적에 사용될 경우.

개인식별정보 내용:

- 귀하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 귀하 자녀 또는 어린이의 가족 주소.
- 개인 식별자, 예를 들면 귀하 자녀 또는 자신의 사회보장번호.
- 귀하 자녀의 신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개인별 특성 또는 기타 정보.

조기 중재 서비스 계약자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는 귀하 자녀의 조기 중재 기록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FERPA 하에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귀하의 동의가 없이 기타 기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FERPA 및 IDEA 부분 C 에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는 귀하 자녀의 이름 및 생년월일과 귀하의 연락처(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정보를 귀하의 동의가 없이 귀하의 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 교육기관 및 지역교육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본 정보는 IDEA 의 부분 B 하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자격을 갖춘 모든 어린이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가 평가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평가의 특성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귀하 자녀가 평가 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그 외에도,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거나 의뢰된 어린이의 학부모로서, 귀하는 기타 조기 중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귀하의 자녀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접수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기타 조기 중재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처음 서비스를 받은 이후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기록 검토

다음 부분에서 설명한 정보 절차의 기밀성에 근거하여, 귀하는 프로그램에서 수집하고, 유지하고, 사용한 귀하 자녀와 가족에 대한 **모든 조기 중재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록은 심사, 평가, 적격성 결정, IFSPs의 발전 및 실시, 조기 중재 서비스의 제공과 귀하 자녀의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귀하 자녀의 조기 중재 기록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액세스 권한**-만약, 귀하 자녀의 기록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경우, CDSA에서는 반드시 지체없이 요청한 일자 이후 10 일일을 초과하지 않고 귀하의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CDSA에서는 IFSP 또는 신원확인, 평가, 편성 또는 적합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모든 청문회에 연관된 모든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의 요청에 응할 것입니다.

조기 중재 기록에 대한 검사 및 검토에 대한 권리:

- CDSA에서 조기 중재 기록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권리.
- CDSA에서 이러한 정보를 포함한 조기 중재 기록의 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본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조기 중재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입니다.
- 귀하를 대신하여 조기 중재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CDSA에서는 귀하가 후견인, 별거와 이혼과 같은 문제들을 관리하는 해당 주법 또는 법원 명령 하에서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통지하지 않은 이상, 귀하에게 자녀에 관련된 조기 중재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액세스 기록**-각 CDSA에서는 반드시 개인 이름, 접속 시간과 개인이 조기 중재 기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목표 등을 포함한 조기 중재 기록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기록(학부모와 권리를 보유한 CDSA의 직원들의 접속은 제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기 중재 기록에 한명 이상의 어린이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귀하는 오직 자녀에 관련된 정보만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거나 또는 자녀에 대한 특정 정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CDSA에서는 귀하에게 기관에서 수집하고, 유지하거나 사용한 조기 중재 기록의 유형 및 장소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록 비용**-CDSA에서는 만약, 비용으로 귀하가 조기 중재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없을 경우, 조기 중재 기록의 사본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SA에서는 IFSP 모임이 끝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무료로 귀하에게 각 어린이 평가, 가족 평가의 사본과 IFSP 평가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CDSA에서는 정보 검색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 수정**-만약, 귀하가 영아 프로그램에서 수집하고, 유지하거나 처리한 조기 중재 기록의 정보가 부정확하고, 허위거나 귀하 또는 귀하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CDSA에 요청하거나 또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CDSA에서는 요청을 받은 다음 일정한 시간 내에 귀하의 요청에 근거하여 정보의 수정 여부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CDSA에서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 수정을 거절할 경우, CDSA에서는 반드시 귀하에게 거절 이유에 대하여 알려주고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에 대하여 조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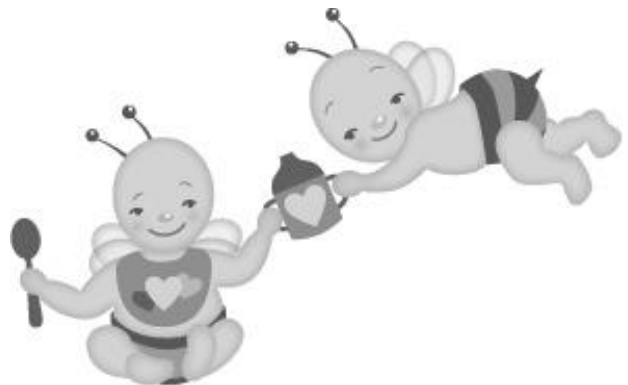
조기 중재 지점에서는 청문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조기 중재 기록의 정보에 이의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가 정확하고, 허위가 아니며 어린이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반드시 34 CFR 99.22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족 교육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 (FERPA) 규제하의 절차에 근거하여 개최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절차들을 절차적 보호 및 분쟁해결에 대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 정책 공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정보가 정확치 못하고, 허위적이거나 또는 어린이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CDSA 에서 대응하여 정보를 수정하고 서면으로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정보가 정확하고, 허위적이지 않거나 또는 어린이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귀하 자녀의 조기 중재 기록에 정보에 대한 논평, 기관/제공자 참여를 반대하는 모든 이유에 대한 서술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제공된 어린이의 조기 중재 기록에 대한 설명은 CDSA 에서 조기 중재 기록 또는 경쟁 부분(귀하가 반대하는 기록의 일부분)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CDSA 에서는 반드시 이 섹션에 있는 어린이의 조기 중재 기록의 일부분을 어린이의 조기 중재 기록으로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CDSA 에서 기타 파티에 어린이의 조기 중재 기록 또는 경쟁 부분을 공개할 경우, 설명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 정보 기밀

이 섹션에서 설명한 기밀 절차는 귀하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개인식별정보에 적용됩니다:

1. 영아 프로그램 또는 모든 **참여 기관**에서 수집하고 사용하거나 또는 유지한 조기 중재 기록에 포함됨.
2. 귀하의 자녀가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정보를 유지하지 않을 때, 조기 중재 서비스에 의뢰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적용됩니다.

## 기밀유지 공지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귀하의 자녀가 CDSA 에 의뢰되었을 때에 귀하에게 기밀유지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개인식별정보를 유지해야 할 대상인 어린이, 필요한 정보의 유형,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정보사용에 대한 설명(정보 수집자원 포함)
- 참여 기관에서는 정보 저장, 제 3 자에게 공개 그리고 개인식별정보의 유지 및 **파괴**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의 개요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과 34CFR 부분 99A 의 규제 실시하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정보에 대한 부모 및 자녀의 모든 프로그램 권리에 대한 설명, 주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인구집단의 모국어로 제공해야 하는 공지에 대한 설명.

## 기밀 유지 조치

다음의 보호절차는 기록의 기밀성을 보장합니다:

- 모든 참여기관/제공자는 수집, 유지, 사용, 저장, **공개** 및 파괴 단계에서 개인식별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 각 기관에서 적어도 한명의 임원이 모든 개인식별정보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아야 합니다.
- 3 세 이하의 노스 캐롤라이나의 정책, 보호와 관례들은 IDEA 및 FERPA 의 부분 C 에 근거하여 적용되므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개인은 이러한 정책, 보호 및 관례에 대한 교육이거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각 참여기관은 공공검사를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기관 내의 직원들의 이름과 지위의 현재명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참여기관/제공자는 영아 프로그램에서 수집하고 유지하거나 또는 사용한 개인식별정보를 더 이상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본 정보를 더 수요하지 않을 때, 부모는 요청서를 제출하여 반드시 정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이름에 대한 영구 기록, 생년월일, 부모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조기 중재 제공자의 이름 그리고 종료 정보(해수와 나이 그리고 종료시에 개입된 모든 프로그램)는 시간의 제한 없이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분쟁해결

만약, 귀하 자녀의 신분확인, 평가, 편성이거나 귀하 자녀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적절한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기관/제공자 참여를 반대할 경우, 귀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세 이하의 노스 캐롤라이나 프로그램은 귀하의 TI 서비스 코디네이터와 또는 귀하 지역의 CDSA 의 기타 연락인과 대화를 나누는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하여 적시적으로 행정예 의한 분쟁해결을 보장합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는 또한 세 가지 형식적 절차를 제공합니다. 중재,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과 진술 고소절차.

모든 절차들은 무료로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 중재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에서는 중재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이거나 또는 진술 고소를 제출하기 전후에 중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모로서 중재 양식에 대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학부모 요청서를 완성한 다음 아래의 주소에 발송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rly Intervention Branch Head  
Division of Public Health  
1916 Mail Service Center  
Raleigh, NC 27699-1916

영아 프로그램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중재를 보장합니다:

- 모든 파티의 부분에서 자발적일 경우.
-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지연하고, 또는 IDEA 의 부분 C 하에서의 기타 권리를 부인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경우.
- 효율적인 중재 기능 교육을 받은 유자격 중재인에 의하여 실시될 경우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에서는 유자격 중재인과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지식을 갖춘 개인들의 명단을 유지시킵니다. 중재인은 반드시 무작위, 회전 또는 기타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중재인의 공정성**-중재인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은 귀하의 자녀에게 조기 중재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한 조기 중재 지점, CDSA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인의 객관성에 모순되는 개인적 또는 전문적 관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중재인 자격을 갖춘 사람은 기관이거나 제공자가 중재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 또는 조기 중재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서 모임 비용을 포함한 중재 과정에 대한 비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재 과정의 각 회의는 반드시 적시에 일정을 잡아야 하며 분쟁 당사자들한테 편리한 지점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중재 과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진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중재 과정에 진행된 모든 논의는 기밀로 남아 있을 것이며 모든 차후의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거나 부분 C 하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의 연방 또는 주 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단락의 아래 부분에서 서명된 서면 중재 계약서는 관할구역의 주법원이거나 또는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비적대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중재는 자발적이며 쌍방에서 반드시 자유롭게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중재 과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 세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서는 귀하한테 편리한 시간과 지점에서 제삼자와 만나서 중재의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중재 이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재는 언제든지 공정한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거나 불평을 진술하려는 귀하의 요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동시에 중재와 공정한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 또는 불평을 진술하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법 절차

귀하는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부모 요청에 대한 정당한 법 절차 양식을 완성한 다음 아래의 주소에 발송하여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arly Intervention Branch Head  
Division of Public Health  
1916 Mail Service Center  
Raleigh, NC 27699-1916

정당한 법 절차에 근거한 고소가 접수되면,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 책임자를 임명하여 고소 해결 과정을 시행합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 책임자는 반드시:

- 부분 C 의 제공 및 장애 유아의 수요와 그들 가족의 이용 가능한 조기 중재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고소 관련 견해의 발표회를 귀담아 듣고, 관련된 문제의 정보를 검사하고 고소를 적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서면 결정서를 포함한 국가 비용의 절차에 대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 책임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성 의미: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 책임자 로 임명된 사람은:
  - 조기 중재 지점, CDSA,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 또는 어린이를 보살피는 작업에 참여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 아닙니다.

-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시행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모순되는 개인적 또는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 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지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유만으로 주 또는 지역 주요기관(조기 중재 지점 또는 CDSA), 조기 중재 서비스 계약자거나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에 참여한 모든 부모의 권리:

- 장애인 영아를 위한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거나 교육을 받은 개인과 변호사와 동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증거를 제시하고 참석한 증인과 대면하고, 반대 심문하며 증인의 참여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
- 청문회가 열리기 최소 5 일전, 부모에게 공개되지 않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의 제출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 부모한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이 서면 또는 전자 축적 필사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모한테 아무런 경제적 부담이 없이 사실과 결정을 내린 결과의 서면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반드시 부모에게 편리한 시간과 지점에서 모든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3 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에서는 반드시 부모의 정당한 법 절차적인 고소를 접수한 다음 30 일 이내에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를 끝내고 각 관계자들이 서면 결정을 발송하였는지 보장해야 합니다. 청문회 책임자는 부모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에 의하여 30 일 타임라인을 초과한 특정 시간의 연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에 의한 청문회 또는 고소 진술에 따라서 발표된 결과와 결정에 피해를 입은 모든 관계자들은 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정당한 법 절차 고소를 수반한 모든 소송절차가 미정인 동안에, 조기 중재 지점과 장애인 유아의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어린이는 계속하여 부모가 동의한 IFSP 에서 확인된 환경속에서 적합한 조기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법 절차 고소가 부분 C 하에서 최초 서비스를 신청해야 할 경우, 어린이는 반드시 분쟁이 없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 고소 진술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조직(기타 주 포함)에서 제기한 주의 기관, 지역기관이거나 개인 변호사가 연방 또는 주 영아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및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서명을 한 위반 사항에 대한 진술과 고소가 기반한 사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아래에 있는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의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Early Intervention Branch Head  
Division of Public Health  
1916 Mail Service Center  
Raleigh, NC 27699-1916

위반 혐의는 반드시 공중위생부의 조기 중재 지점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일자 이전의 일년 이내에 발생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관계자는 반드시 공공기관이거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에게 고소장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는 조기 중재 지점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공중위생부의 조기 중재 지점에서 서명한 서면 고소장을 접수하여서부터 60 역일 이내에 고소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문회 책임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반드시 시간 연장을 허락하여야 합니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시일 연장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60 일 이내에 조기 중재 지점에서는:

- 만약, 조기 중재 지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독립적인 현장 조사를 수행 해야 합니다.
- 고소인에게 구두 아니면 서면으로 고소 혐의 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CDSA 또는 기타 중재 기관/제공자에게 조기 중재 지점의 재량, 고소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과 중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포함한 고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CDSA, 공공기관 또는 조기 중재 제공자가 부분 C 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고 관련 정보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고소장의 각 혐의를 해결하고 사실과 결론의 조사결과와 주요 기관의 최종 결정에 대한 이유를 포함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에게 재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필요 시, 규정준수를 지키기 위한 기술지원 활동, 협상과 시정조치를 포함한 조기 중재 지점의 최종 결정에 대한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만약, 최종 결정에서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표시할 경우, 조기 중재 지점에서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 고소 대상(보상 서비스 또는 금전적인 보상) 인 어린이와 가족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적합한 시정조치를 포함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영아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 영아와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미래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조기 중재 지점은 오직 다음의 경우에만 제한 시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특정한 고소에 관련된 이례적인 경우.

- 중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동의한 학부모(또는 개인이거나 조직, 만약, 개인이거나 조직에서 국가법 절차에 따라 중재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와 ITP, 공공기관 또는 조기 중재 제공자.

만약,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의 주제가 되는 고소장을 받거나, 또는 청문회의 일부분이 되는 다중 이슈를 포함할 경우, 영아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청문회가 결속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에서 해결하고 있는 고소장의 일부분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의 일부분이 아닌 고소장의 모든 이슈는 반드시 이 섹션에서 설명한 제한 시간과 절차를 사용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된 고소장에서 명시된 이슈가 동일한 관계자가 참여한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에서 이미 결정되었을 경우:

-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의 결정은 이 이슈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습니다.
- 영아 프로그램은 반드시 고소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공공기관,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가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의 결정을 실행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소는 반드시 조기 중재 지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 대리 부모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리 학부모를 임명합니다:

- 확인할 수 있는 부모가 없을 경우.
- 학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 어린이가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서 결정한 국가의 **피후견인**인 경우.

대리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영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어린이에게 필요한 대리 부모를 결정하는 방식과 대리 부모를 임명하는 단계를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하여야 합니다. ITP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필요성을 결정하는 30 일 이내에 대리 학부모 임명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리 부모에 대한 정보:

- 어린이의 관심과 모순되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 어린이가 참가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의 CDSAs, 또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조기 중재 서비스를 어린이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람 또는 직원은 아닙니다.

대리 부모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문제에서 어린이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에 대한 평가.
- 평가와 정기검토를 포함한 어린이의 IFSPs 발전 및 적용.
- 어린이에게 지속적으로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
- 연방법 또는 연방규제 또는 N.C. ITP 정책에서 규정한 기타 모든 권리.



## 용어

### 평가

평가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유자격 직원은 지속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어린이의 유일한 장점과 수요, 그리고 IDEA 의 부분 C 에 근거하여 어린이의 적격성 기간 전체에 걸쳐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조기 중재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절차는 어린이와 어린이 가족의 평가도 포함합니다. 최초의 평가는 어린이의 평가와 어린이의 제일 처음 IFSP 모임이 열리기 전에 실행된 가족 평가를 가리킵니다.

### 적합한 조기 중재 서비스

적합한 조기 중재 서비스는 IFSP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IFSP 에서 확인된 결과를 거두려면 IFSP 에는 반드시 어린이와 가족의 독특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특정 조기 중재 서비스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방법규에는 조기 중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정의 내렸습니다. 즉, “[IDEA 의 부분 C]의 부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어린이의 발육 수요와 어린이 발육을 향상시키는 데 관련된 가족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개인식별정보의 파괴

조기 중재 기록의 물리적 파괴 또는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제거하여 더 이상 개인적으로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합니다.

### 공개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ITP 기록 또는 이러한 기록을 포함한 개인 식별정보에 접속할 수 있거나 기타 관계자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구두,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중재 기록

조기 중재 기록은 IDEA 의 부분 C 및 IDEA 의 부분 C 에 있는 규제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유지하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조기 중재 기록의 용어는 34CFR 부분 99(가족 교육 법규와 1974, 20 U.S.C. 1232g(FERPA)을 시행하는 규제)에 있는 “교육정보”에 대한 정의 범위 내에 있는 기록 유형을 포함합니다.

### 조기 중재 서비스 제공자

자격을 갖춘 어린이와 어린이의 가족을 위하여 수령한 공금으로 조기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영기관 또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 평가

유자격 직원이 영아 프로그램을 위하여 어린이의 초기 및 지속적인 적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초기 평가는 어린이의 적격성을 평가를 말합니다.

### 가족 기준에 따른 평가

유자격 직원이 가족의 자원, 우선권과 관심 그리고 어린이의 발육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족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평가를 말합니다.



**개별화 가족 서비스 계획(IFSP)**

자격을 갖춘 어린이와 가족에게 조기 중재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획서:

- 가족을 포함한 IFSP 팀에서 개발하였습니다.
- 어린이의 여러 전문 분야의 평가와 가족 기준에 따른 평가에 기반하였습니다.
- 기능 위주의 결과, 전략과 활동을 포함.
- 어린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린이의 발육과 가족의 능력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중재**

등록한 어린이의 학부모를 도와주고 조기 중재 제공자들이 비공식적이고 조화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충돌을 해결하려는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N.C. 영아 프로그램의 과정을 말합니다. 중재는 자발적이며 쌍방의 관계자들은 반드시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쌍방의 관계자들은 동의서를 함께 작성한 다음 반드시 동의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중재는 학부모의 공정한 적법절차에 의한 청문회거나 고소장 진술을 부인하거나 지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 전문 분야 위주**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별도의 전문적 분야를 포함:

어린이의 평가와 어린이 및 가족의 평가: 그리고 IFSP 팀에서, 부모의 참여와 두명 또는 그 이상의 별도의 전문적 분야를 가진 개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인들 중의 한명은 반드시 서비스 코디네이터여야 합니다.

**모국어**

제한된 영어 능력을 갖춘 개인과 관련된 지점에서 모국어는 어린이의 학부 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평가를 시행할 때, 만약, 언어가 어린이한테 발육상으로 적합할 경우, 어린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

동일한 연령대의 영아거나 장애가 없는 영아에게 자연스럽게나 전형적인 설정. 자연 환경은 어린이의 가정 또는 커뮤니티 설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어린이의 생물학적 또는 양자관계의 부모. 주 또는 지방단체의 주법, 규정 또는 계약의무에서 수양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고 금지하지 않을 경우, 수양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부모 역할을 담당할 수 있거나 또는 어린이(만약, 어린이가 주의 피후견자가 아닐 경우의 주는 제외)를 위하여 조기 중재, 교육적, 건강적, 발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보호자.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생물학적 또는 수양부모(조부모, 의붓부모 또는 기타 친척을 포함)를 대신할 수 있는 개인.

어린이의 복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인.

대리 부모.

### 참여 기관

참여 기관은 3 세 어린이를 위한 영아 프로그램에 대한 IDEA 의 부분 C 의 요구사항과 특수 어린이에 관련된 IDEA 의 부분 C 의 규제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협회를 의미합니다. 참여 기관은 조기 중재 지점, CDSAs, 조기 중재 제공자와 부분 C 서비스(서비스 조정, 평가와 기타 부분 C 서비스를 포함)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참여 기관은 기본적인 참조 자원(메디케이드 또는 CHIP 프로그램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부분 C 서비스를 위하여 유일하게 자금 출처 역할을 담당한 민간 기업(예를 들면, 민영보험회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내용:

- 귀하 자녀, 귀하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이름.
- 귀하 자녀 또는 어린이의 가족 주소.
- 귀하 자녀 또는 귀하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 귀하 자녀의 생년월일, 출생지 또는 어머니의 결혼하기 전의 성과 같은 기타 간접적인 식별자.
- 상당히 확실성 있게 귀하 자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 특성 또는 기타 정보의 목록.
- 조기 중재 프로그램에서 귀하의 자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요청한 정보.

### 주의 피후견인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어린이의 법적 양육권을 제공받았고 어린이를 대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알려진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카운티 부서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영아 프로그램

노스 캐롤라이나 주  
3 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노스 캐롤라이나 보건 사회 복지부  
공중위생부  
여성 및 어린이 보건과  
조기 중재 지점



[www.ncdhhs.gov](http://www.ncdhhs.gov)  
[www.publichealth.nc.gov](http://www.publichealth.nc.gov)  
[www.bearly.nc.gov](http://www.bearly.nc.gov)

재생산 가능  
2013 년 4 월

*보건 사회 복지부는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면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나이 또는 장애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습니다.*